

2025년 간석4동 종합감사 결과

감사 개요

- 감사대상 : 간석4동
- 감사기간 : 2025. 9. 8. ~ 9. 12. (5일)
- 감사범위 : 2022년 10월 ~ 감사일(기관운영 사무 전반)
- 감사반원 : 감사총괄담당 외 5명
- 지적사항

행정상(건)			재정상(건/원)		신분상 (건/명)	기관경고
계	시정	주의	추징(회수)	추급(환급)		
18	6	12	2/254,220	1/276,000	-	-

2025년 간석4동 **종합감사** 결과

[우수시책 및 미담사례]

1. 통장자율회 공동체모임 “재활용 방앗간” 활동

- 생활 속 폐자원을 활용하여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에 기여
-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환경보호의식을 제고

□ 추진개요

- 기 간 : 2025년 1월~12월 월 1회 이상
- 주 체 : 간석4동 통장자율회

□ 추진사항

- 공동체모임 활동으로 재활용 공예 시행
- 간석4동 주민총회 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공동체모임 활동으로 통장간 공동체의식 강화 및 환경보호 의식 제고
-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환경보호 분위기 확산

2. 한부모 가족 싱싱한 계절김치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건강한 식생활지원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공급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실천

□ 추진개요

- 기 간 : 2025년 상 하반기 각 1회
- 주 체 : 간석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대 상 : 간석4동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연60세대)

□ 기대효과

-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계절 김치 전달로 건강한 식생활과 충분한 영양공급을 지원
- 지역사회 나눔 문화 형성과 더불어 사는 마을 분위기 조성

□ 향후계획

-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한부모 가족 세대를 중심으로 지속 추진

2025년 간석4동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 부적정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개요

간석4동장 및 간석4동 주민자치회는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간석4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간석4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운영)제1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회의록 서식에 따르면 회의 개최 후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발언자 성명 및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 후 참석부와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간사, 자치부회장,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간석4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제14조(회의 개최)제2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세칙 제40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제2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세칙 제35조(회계의 처리)제5호에 따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등 운영기금 중 경상적경비(강사수당 및 공과금 등)와 50만원 미만의 금액은 선 지출 후 정기회의 시 주민자치회에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간석4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수감기간 중 【표1】과 같이 총 3회 회의록을 미작성 하였고, 총 2회 회의록 작성 시에는 심의내용을 누락하였으며, 총 4회 심의의결서 의사 표기 누락 등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총 5회 주민자치 기금 운영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 및 간석4동 주민자치회장은

(주의) 주민자치회 회의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자체교육을 실시하시고,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관리 소홀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개요

간석4동장 및 간석4동 주민자치회는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간석4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간석4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이용 등)에 따르면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별표 1의 사용료, 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이용신청 등)제2항에 따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접수기간 중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행규칙 제15조(사용료·수강료 징수)제2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회계출납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수강료는 현금, 카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만약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수강료 관리 계좌에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간석4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 30조(사용료 등 징수 및 관리)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강료의 수입은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에 따라 일별로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한 다음날까지 운영기금 관리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따라서 간석4동에서는 ‘**년 *분기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자 중 현금으로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 익일까지 주민자치기금 회계관리 통장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총 △회 ■명에 대하여 지연 입금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 및 간석4동 주민자치회장은

(주의) 주민자치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연찬 등 자체교육을 실시하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자치회 기금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개요

간석4동장 및 간석4동 주민자치회는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간석4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간석4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운영 경비의 집행)제2항에 따르면 경비의 집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카드 또는 계좌 이체로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출결의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회계출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경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하여 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회 기금 또한 상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에 따르면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지출의 절차)제4항에 따르면 지급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제1항에 따르면 지급을 할 때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훈령 제107조(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에 따르면 공사, 물품 구매·제조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간석4동장 및 간석4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회 기금 지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감기간 중 관련 증빙서류가 누락되거나,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 미징구, 매식비 단가 초과 등 주민자치회 기금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 및 간석4동 주민자치회장은

(주의) 주민자치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연찬 등 자체교육을 실시하시어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 개요

- 간석4동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출예산집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지출원 변경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러나, 간석4동에서는 202*년 두 차례 지출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지방회계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2항에는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에 의하면, 행사실비지원금 (301-11)의 경우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러나, 간석4동에서는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시 2022년도 매식비 기준단가 (8,000원)를 초과하여 집행한 내역이 1건 확인되며, 일부는 매식비 기준단가 (8,000원/‘24. 6. 1이후 9,000원) 이내 준수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자료 첨부이 미흡하였다.

4.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 미작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장, 동장은 현수막, 벽보, 전단을 구에 주소를 둔 주민 및 단체에서 정비·수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3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항에 따르면, 동장 등은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불법옥외유동 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러나, 간석4동에서는 주민 및 단체에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을 미작성하였다.

5.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시 정 요 구

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개요

- 간석4동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공무원 급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일반대상자(일반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하는 공무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당직휴무·방학·결근 등의 사유는 출근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1일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함.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러나, 간석4동에서는 ○○○에 대하여 202*년 1월 교육파견 명령, 조퇴 등에 따라 출근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이었음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감액없이

과다 지급하였으며, 202*년 2월분 시간외수당 정액분은 일할계산하여 202*년 3월 급여분에 지급되었으므로 미지급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다 지급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은

(시정) ○○○에게 과다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231,200원은 회수하여 주시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06]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 소홀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개요

간석4동에서는 주민등록증 관리업무를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등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8항에 따르면 거주지가 아닌 시·군·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간석4동에서는 타 시·군·구 거주자인 □□□ 등 9명의 6개월 경과 미수령 주민등록증을 해당 시·군·구로 지연하여 송부하는 등 이송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은

(주의) 「주민등록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등록증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시 정 요 구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처분 부적정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개요

간석4동에서는 주민등록 신고 지연 시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관련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과태료)에는 동법 제40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별표4)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 제40조제3항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 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 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 10만원

-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총무과-27945(2024.7.16.)호, 총무과-27964(2024.7.17.)호 계획통보 내용에 따르면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2024.7.22.~11.14.) 중에 자진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할 수 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간석4동에서는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한 □□□ 등 8명에게 1/2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과태료를 과다 부과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은

(시정) 과다 부과한 8명에 대한 과태료를 환급하시고, 「주민등록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관리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정정신고 처리 소홀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개요

간석4동에서는 거주불명등록 및 재등록 업무 시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 (행정안전부)」 등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 2. 본인
 -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세대주의 배우자
 -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2024 주민등록 사무편람」(p.68)에서 정정신고서에 의하여 세대주를 변경할 때, 현 거주지에서 거주지이동 없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에 전(前)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세대주 변경 처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2024 주민등록 사무편람」 (P69)에 따르면 세대주 사망 등의 사유발생으로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 대상이므로 정정신고서를 접수하여 세대주 변경을 처리해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에 따르면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간석4동에서는 세대주 사망에 따른 세대주 변경 건에 대하여 □□□ 등 100명에게 정정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세대주를 변경하였고, 세대주 변경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은

(주의) 「주민등록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정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사무 인계·인수 소홀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개요

간석4동에서는 인사발령, 사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담당업무를 인계·인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업무의 인계·인수)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3조(사무의 인계 등)에 의하면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간석4동에서는 감사범위 기간 동안 인사발령 및 업무조정 등의 사유로 총 00번의 사무분장을 실시하였으나, 이 중 00건만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업무 인계·인수를 실시하였고, 그 외에는 인계·인수를 실시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은

(주의) 관련규정을 숙지하시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 사유 발생 시 담당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시 정 · 주 의 요 구

제 목 통장 관리 업무 부적정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개요

간석4동에서는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통에 통장을 두고 임명·해임 및 실비변상 등 통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통장 월정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14조(실비변상)에 따르면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월 회의 개최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실비변상의 방법)에 따르면 통장 월정수당은 통장의 임명 또는 해임으로 지급월에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월중 임명·해임된 통장의 월정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에서는 통장 월정수당 지급 기준 안내를 통하여 임명자는 임명일을 포함한 재직일수를 반영하고, 해임자는 해임일을 제외하고 재직일수를 산정하여 일할 지급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임명자 : 월정액 × (임명일 포함 재직일수 / 해당 월 일 수)

▷ 해임자 : 월정액 × (해임일 제외 재직일수 / 해당 월 일 수)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간석4동에서는 통장 월정수당 지급 시 지급월의 신분상 변동사항을 착오 반영하여 월정수당을 과지급 한 사실이 있다.

3. 통장 모집공고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통·반장의 임명과 해임) 제3항에 따르면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임명대상자가 없는 경우 제2항의 연임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재임명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통장 임명이 어려운 경우 관할동의 해당 통 주변의 주민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나.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간석4동에서는 3회 이상 공개모집 후 통장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4회차 공고 시 부터 관할동의 해당 통 주변 주민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야 함에도 3회차 공개모집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고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은

(시정) 00·00통장에게 과지급한 월정수당 23,02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통장 관리에 관련한 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동일·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11]

남 동 구

시 정 요 구

제 목 특별휴가(육아시간) 사용 부적정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개요

간석4동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24.7.2. 개정 -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36개월 범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Ⅷ. 휴가에 따르면 육아시간 사용 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간석4동에서는 육아시간 사용 시 日 최소근무시간인 4시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연가로 처리하지 않고 육아시간으로 처리하여 1일 2시간씩 - 3회, 총 6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적정하게 승인·사용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은

(시정) ○○○의 부적정 사용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차감) 처리 하시기 바라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동일·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시 정 요 구

제 목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자 관리 소홀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개요

간석4동에서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동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에 따르면 각 호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재직 또는 피교육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갈음하며, 교육훈련을 실시한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해당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소속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년도 민방위 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직장의 장 등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종료 즉시 교육실시 확인서²⁾를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며 교육실적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부양의무자 등은 서면 교육이 가능하되 서면교육 과제물 보관을 철저히 해야하며, 상·하반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자체교육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

1) 1.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2.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3.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자, … 중략 …
11.그 밖에 업무 특성상 집합교육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경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및 부양의무자 등)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활용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간석4동에서는 감사범위기간 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사유로 자체교육인정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교육(서면교육 포함) 및 교육결과 등록, 자격유지 여부 확인 등의 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은

(시정) 자체교육인정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종료 처리를 하시고, 자체교육(서면교육 자료 발송·과제물 회신 포함) 결과를 확인·등록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숙지하시어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청소년증 발급 부적정 및 민원처리 소홀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개요

간석4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하여 만 9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에서는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소년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청소년증을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7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리인(친권자)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 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을 구비·제출하여야 하고,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상의 서명(또는 인)은 대리인 이름으로 하며, 대리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2022~2023년 지침에는 청소년증 발급시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았으며, 2024년 지침변경에 따라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후 청

소년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 하여서는 안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 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간석4동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민원 등록 후 43건에 대하여 민원문서에 대한 표시를 누락하였고, 대리인 또는 본인 신청시 불필요한 서류(대리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14세미만 보호자 용),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등본)를 징구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대리인 : 등본, 본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14세 미만)를 징구하지 않는 등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은

(주의) 청소년증 발급 업무 수행시 관련 법령 및 업무 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시 정 요 구

제 목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개요

간석4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제5편 수급자관리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에 의하면 의사능력이 없는(미약한) 무연고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 또는 연1회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고, 급여관리자 지정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 중 우선적으로 급여관리자로 지정하고, 부양의무자 등이 없거나 부양기피, 원거리거주, 부당한 급여사용 우려 등으로 급여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재가복지담당자, 의료기관 복지담당자, 교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복지위원, 이웃 등 수급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한 지역인사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여관리자 지정시에는 “급여관리 동의서”[서식 38호]를 작성하고 “지정서교부”[서식43호]를 교부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급여관리 사실 및 책임 인지를 유도해야 한다.

단, 후견인이 지정되었거나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급여관리·사용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나 본인이 타인의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담당자는 지침의 [서식40호]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자필로 제출받은 후 의견을 기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임에도 본인이 타인의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는 않으나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로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간석4동에서는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사용 능력에 대한 확인없이 12명에 대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을 누락 하는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은

(시정) 급여관리·사용 능력을 확인하여 급여관리자가 미지정된 대상자들은 조속하게 급여관리자 지정 또는 본인관리확인서를 수령 등록하여 주시고, 의사무능력대상자 관련지침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 사후관리 부적정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개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욕구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간석4동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에 따르면 사례관리의 개입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사례관리를 종결 할 수 있으며,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및 새로운 문제·욕구에 대한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관리(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고, 모니터링 시기는 종결 후 9개월 내 2회(서비스 연계 가구는 1회 실시) 실시하되 최초는 3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가구별로 상담계획을 수립 후 상담을 시행하고 특히, 위기도가 높았던 가구의 경우 종결 직후 빠른 시일 내 사후관리 실시하도록 모니터 상담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간석4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종결한 6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 종결 이후 최초 3개월 이내 사후관리(모니터링)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은

(주의) 통합사례관리 업무시 관계 법령 및 업무 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및 용역 계약 등 감독 업무 소홀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개요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에 따르면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고용보험료는 부가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제외)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마. 착공·공정보고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는 공사 관련 서류인 공사현장대리인계, 공사예정공정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감독자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검사)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에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 및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을, 상용 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도 위와 같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간석4동에서는 공사 계약 시 반영되어야 하는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거나 착공 시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용역 준공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준공 검사를 누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은

(주의) 관련법규 및 업무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동일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및 감독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17]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최종 하자 검사 누락 및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산정 소홀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개요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검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검사를 완료하고 목적물을 인수하므로 통상적으로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함.)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 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관리부를 갖추어 공사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사 준공 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목적물을 인수한 날이 아닌 다른 기간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정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은

(주의) 관련법규 및 업무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동일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검사 및 기간산정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주 의 요 구

제 목 소방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소관기관 간석4동

조치기관 간석4동

내 용

1. 업무개요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간석4동에서는 2022년 실시하여야 하는 자체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간석4동장은

(주의) 관련법규 및 업무규정을 숙지하시어 향후 동일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훈련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